

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61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8월 1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급변하는 관광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, 서울 관광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'18. 4월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.
- 나.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9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울관광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- 대상기관 :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
- 관련법령 :
 - 법령 :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 - 조례 :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1조(출연금 및 기금)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

나. 주요 사업

- 국내·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
- 기업회의, 인센티브관광, 국제회의, 전시회 등 육성 지원
-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
-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
-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
- 관광시장 조사·연구·컨설팅 및 정보 제공
- 관광기업 육성 및 지원 등

다. 출연의 필요성

- 서울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기 위해 설립된 서울시 유일의 관광전담기관인 서울관광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,
-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사업, 관광콘텐츠 확충 및 관광객 편의개선 사업 등의 체계적 추진을 통해 서울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시키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조치사항 : 2019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관광정책과 관광정책팀 임진규 (☎2133 -2810)